

|        |           |
|--------|-----------|
| 의안번호   | 2219394   |
| 의 퇴 인  | 유의동의원     |
| 회 답 일  | 2026.9.7. |
| 추 계 번호 | 26D2986   |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주둔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 18억 1,500만원 등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총 86억 3,800만원(연평균 17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1~2035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합계    | 연평균   |
|-------------------------------|-------|-------|-------|-------|-------|-------|-------|
| 주둔지역종합계획 수립<br>(안 제5조)        | 192   | -     | -     | -     | -     | 192   | 38    |
|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br>실시(안 제26조) | 1,623 | 1,655 | 1,689 | 1,722 | 1,757 | 8,446 | 1,689 |
| 합계                            | 1,815 | 1,655 | 1,689 | 1,722 | 1,757 | 8,638 | 1,728 |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5조(주둔지역종합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주둔지역 <sup>1)</sup> 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의무규정 |
| 2  | 안 제10조(사업비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무규정 |
| 3  | 안 제11조(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둔지역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 의무규정 |
| 4  | 안 제1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교육부장관은 주둔지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1) 제정안 제2조(정의)에 따르면, “주둔지역”이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

|    |                             |                                                                                                                                                                                                                                  |      |
|----|-----------------------------|----------------------------------------------------------------------------------------------------------------------------------------------------------------------------------------------------------------------------------|------|
| 5  | 안 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주둔지역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6  | 안 제18조(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 -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등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7  | 안 제19조(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                                                                                                                             | 의무규정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둔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3항)<br>-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둔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음(제4항)                                                   | 재량규정 |
| 8  | 안 제20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sup>2)</sup> 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br>-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9  | 안 제21조(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 재량규정 |
|    |                             | -국방부장관은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 의무규정 |
| 10 | 안 제23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핍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11 | 안 제24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 -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12 | 안 제25조(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의 설치)      |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의무규정 |

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제정안 제2조(정의)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    |                         |                                                                                                                                                     |      |
|----|-------------------------|-----------------------------------------------------------------------------------------------------------------------------------------------------|------|
| 13 | 안 제26조(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br>-국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의무규정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5조(주둔지역종합계획의 수립)         | ○    | -                                                                                         |
| 2  | 안 제10조(사업비의 지원)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3  | 안 제11조(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4  | 안 제16조(교육재정 지원의 특례)         | ×    | ○ 교육부장관의 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5  | 안 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    | ○ 주둔지역에 대한 보조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주둔지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6  | 안 제18조(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 ×    | ○ 주둔지역에 조성될 지방산업단지의 위치·규모, 도로·전력시설 등 특별지원 대상 시설 등의 설치 종류·수량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7  | 안 제19조(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     | ×    | ○ 주둔지역에 설치될 문화·관광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기금 대여·보조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8  | 안 제20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 ×    | ○ 주한미군부대장과의 협의에 따른 주한미군 교육·견학의 내용, 소요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주변지역에 설치될 복리시설의 설치 종류·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9  | 안 제21조(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 ×    | ○ 주변지역에 설치될 주민편익시설의 종류·규모, 국가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 10 | 안 제23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 ×    | ○ 지방교부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

|    |                         |             |                                                                                                                                                                                                                                                 |
|----|-------------------------|-------------|-------------------------------------------------------------------------------------------------------------------------------------------------------------------------------------------------------------------------------------------------|
| 11 | 안 제24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 ×           | ○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에 따른 각 지역별 차등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
| 12 | 안 제25조(주한미군 분쟁상담센터의 설치) | -           | (미대상)<br>○ 현행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sup>3)</sup> 」,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외교부훈령)」에 따라 SOFA 국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운영지침에 따르면 SOFA 국민지원센터는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 SOFA 관련 민원 상담’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현 SOFA 국민지원센터에서 제정안의 주한미군 분쟁상담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13 | 안 제26조(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 ○<br>(일부추계) | ○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비용, 환경오염 피해의 배상·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은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에 따른 주둔지역종합계획 수립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31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sup>4)</sup>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북미국) ⑨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한 미국 군대의 주둔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한 미국 군대 관련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북미지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67호)」 제4조(SOFA 국민지원센터의 업무)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 SOFA 관련 민원 상담  
(이하 생략)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sup>5)</sup>을 적용함
-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31년부터 2035년까지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주둔지역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 따라 주둔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 1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최근 5건) 예산 평균금액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기본계획 수립 관련 행정안전부의 최근 5건의 연구용역은,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으로, 5건 연구용역 예산의 평균 금액은 1억 6,300만원임
    - 해당 평균 금액을 2023년도 비용으로 보고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 2031년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1억 9,200만원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31년에 비용이 발생

[표 2] 주둔지역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1~2035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합계  |
|------------------------|------|------|------|------|------|-----|
| 주둔지역종합계획 수립<br>(안 제5조) | 192  | -    | -    | -    | -    | 19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 구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 2.1  | 2.3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안 제26조)

- 안 제26조에 따른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편성된 예산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위하여 14억 7,000만원을 편성함<sup>6)</sup>

-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 16억 2,300만원 등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총 84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1~2035년  
(단위: 백만원)

|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합계    |
|----------------------------|-------|-------|-------|-------|-------|-------|
|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안 제26조) | 1,623 | 1,655 | 1,689 | 1,722 | 1,757 | 8,44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주둔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 18억 1,500만원 등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총 86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1~2035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합계    |
|----------------------------|-------|-------|-------|-------|-------|-------|
| 주둔지역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 192   | -     | -     | -     | -     | 192   |
|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안 제26조) | 1,623 | 1,655 | 1,689 | 1,722 | 1,757 | 8,446 |
| 합계                         | 1,815 | 1,655 | 1,689 | 1,722 | 1,757 | 8,63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세부사업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1241-308) 사업의 내역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및 확산방지조치사업'에서 총 90여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함(2026년 실시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5개소임)

##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전상욱 | 김안나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전상욱 | 02-6788-4673 | flyhigh@assembly.go.kr |